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채 수 지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로 전환하는 한편,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사무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고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(안제9조)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(안 제12조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, 사회적경제 특구(한시사업)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(안 제3조, 제8조, 제10조,

제16조)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